

춘천지방법원 2018. 11. 14 선고 2017나5191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5. 14 선고 2018다298393 판결

춘천지방법원 2018. 11. 14 선고 2017나51911 판결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. 5. 31 선고 2016가단1002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해

담당변호사 배오석, 김진우, 임윤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홍열

피고, 피항소인대한민국

변론 종결2018. 8. 29.

판결 선고2018. 11. 14.

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. 5. 31. 선고 2016가단100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임야 4,383㎡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째줄 첫머리에『살피건대,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12호증[F리임야지적도(1953년~199년)]의 기재는 그 작성 형식, 명의자,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,』를 추가하는 외에는,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성환

판사김보현

판사유재영